

사법부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른다. 사법부의 조직 체계는 대법원 산하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포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민사, 형사, 가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왕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법원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특허법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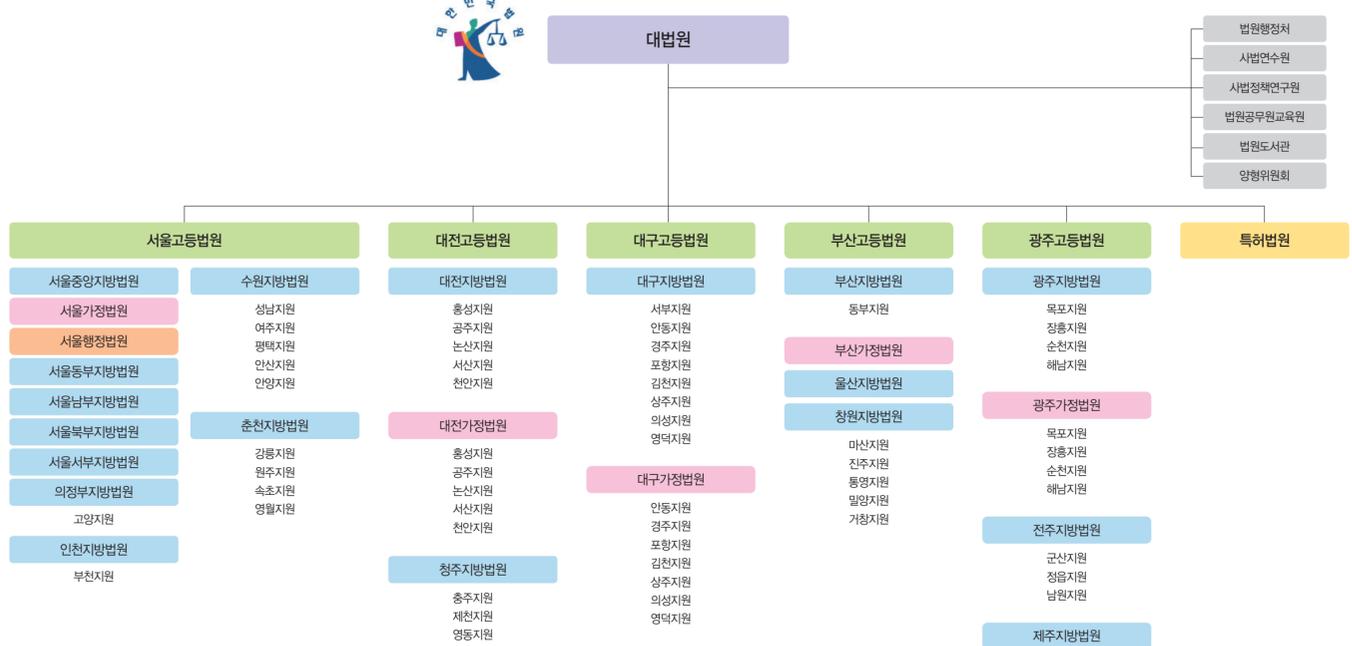
대법원은 삼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고심으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

나는 단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며,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에 해당한다. 이렇듯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는 대법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인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 심판,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재판장)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하는 전원 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어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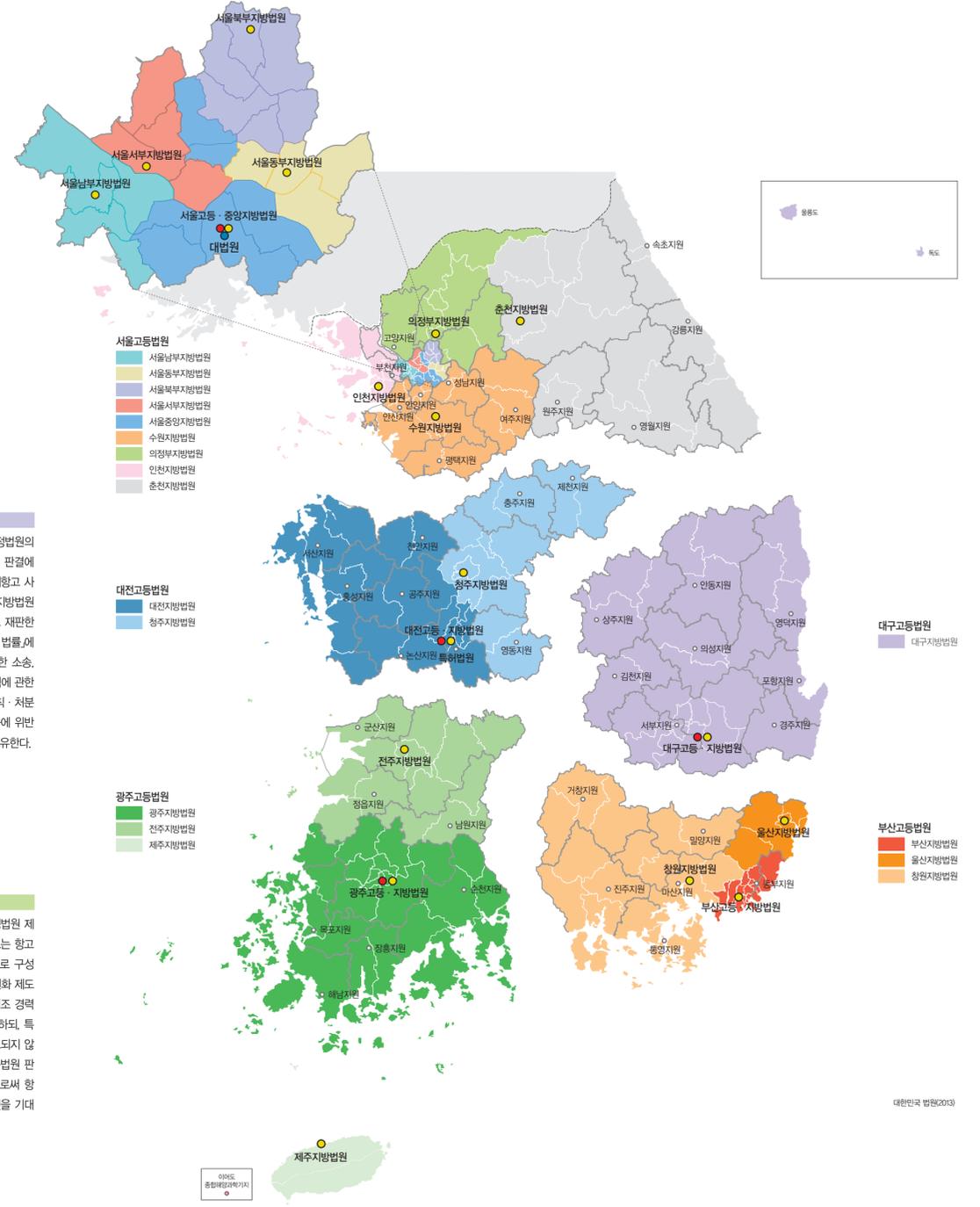
의결 일치에 따라 재판하는 부에 의해 행사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기관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법 행정은 전체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

활동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 위임할 수 있다. 대법관 중 1인이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중요한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견을 거쳐 처리한다.

사법부 조직도



사법부의 구성 전국 법원의 분포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재심 판결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도 재판한다.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인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전속 관할한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임명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들은 합의부가 심판한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 구역 내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지원이 있다.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 1990년부터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권도 보유한다. 가사 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 보호 사건, 가정 보호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행정법원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 수용, 근로, 일반 행정 등의 사건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맡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